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45 발의연월일: 2025. 2. 26.

발 의 자:정성호·추미애·한민수

황 희・김병기・윤호중

황정아 · 윤종군 · 임광현

박홍배 • 노종면 • 이훈기

이수진 · 김문수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이른바 '딥페이크 영상물'을 이용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음.

그러나 불법촬영범죄와 딥페이크 영상범죄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범행 기간과 횟수의 특정이 어려우며 인터넷에 피해영상물이 한 번 유포되면 사실상 수습이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 를 입힌다는 점, 최근 범죄가 이른바 'N번방 사건'과 같이 가해자가 막대한 수입을 얻는 수익사업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범죄 피해자는 피해영상물 삭제나 피해 회복에 막대한 정신적, 재산적 부담을 감수해 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불법촬영 또는 허위영상물을 이용한

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의회복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3조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장(제53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보칙

- 제53조(손해배상의 책임) ① 제14조제3항·제5항 및 제14조의2제3항·제5항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은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로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 -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
 - 2. 범죄행위의 기간 및 횟수, 반포등의 규모와 피해의 회복가능성
 - 3. 범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
 - 4. 범죄를 범한 사람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
 - 5. 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산상태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)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범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장 보칙</u>
<u><신 설></u>	제53조(손해배상의 책임) ① 제14
	조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의2
	제3항ㆍ제5항의 죄에 해당하는
	범죄를 범한 사람은 피해자에
	대하여 범죄로 발생한 손해의 5
	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
	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	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
	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
	고려하여야 한다.
	1.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
	입은 피해 규모
	2. 범죄행위의 기간 및 횟수, 반
	포등의 규모와 피해의 회복가
	<u>능성</u>
	3. 범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 행
	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
	<u>이익</u>
	4. 범죄를 범한 사람의 피해구
	제 노력의 정도
	5. 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산상
	<u>태</u>